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형구조 관련 내용 삭제
- A-U 클래스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종류 A-U BO253	<삭제>
제2조(용어의 정의)	8. "전환형(엄브렐러)" 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	<삭제>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제2항 6. 전환형 제3항 4. 종류 A-U 수익증권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	제2항 <삭제> 제3항 4. <삭제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1항 4. 종류 A-U 수익증권	제1항 4. <삭제>
제27조의3(투자신탁의 전환)	(생략)	<삭제>
제39조(보수)	제3항 [종류 A-U 수익증권]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82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50 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0	제3항 <삭제>

	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	
제40조(판매수수료)	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.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종류 A-U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 이내 ③제2항제1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, 집합투자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	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대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분류** 전환형 **보수** ※ 주석사항 종류 A-U, 종류 W, 종류 C-E 및 종류 C-P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분류** <삭제> **보수** ※ 주석사항 종류 W, 종류 C-E 및 종류 C-PE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(생략)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해당사항 없음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 A-U : BO253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삭제>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** 마. 특수형태 -전환형 (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신탁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** 마. 특수형태 - <삭제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 A-U : BO253	**1.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삭제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- 전환형구조 관련 내용 삭제 - A-U 클래스 삭제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종류 A-U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가. 매입 (2) 가입대상 *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 종류 A-U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, 투자신탁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가. 매입 (2) 가입대상 *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 <삭제>

	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생략)	<삭제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A-U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A-U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A-U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삭제>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삭제> 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<삭제>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9호)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7조의3 (투자신탁의 전환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9.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9. <삭제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인Best 신종MMF(K-1호)[국공채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7조의3 (투자신탁의 전환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8.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8. <삭제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
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(추가)	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전환형 구조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라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7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9.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9. <삭제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(K-1호)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52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8.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8. <삭제>
제52조의3 (투자신탁의 전환2)	①수익자는 제52조의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2.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(이하 "MMF"라 하고,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"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" 및 "하나UBS신종MMF(S-26호)"를 말하며, 수익자가 법인 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"하나UBS 신종MMF(S-29호)"를 말한다). 다만,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-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.	①수익자는 제52조의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2.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(이하 "MMF"라 하고,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"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"를 말하며, 수익자가 법인 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"하나UBS 신종MMF(S-29호)"를 말한다). 다만,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-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	**[1] 투자전략**	**[1] 투자전략**

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I. 집합투자 기구의 기타 정보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전환형 구조 1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[종류 A-U])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전환형 구조 1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[종류 A-U])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

	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엄브렐러리버스인덱스증권투자신탁(K-1호)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52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9.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9. <삭제>
제52조의3 (투자신탁의 전환2)	①수익자는 제52조의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2.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(이하 "MMF"라 하고,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"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" 및 하나UBS 신종MMF(S-26호)"를 말하며,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"하나UBS 신종MMF(S-29호)"를 말한다). 다만,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-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.	①수익자는 제52조의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2.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MMF(이하 "MMF"라 하고,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"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"를 말하며,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 "하나UBS 신종MMF(S-29호)"를 말한다). 다만,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종류 A-U 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해당한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I.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

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전환형 구조 1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[종류 A-U])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라. 전환형 구조2 [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] - 신종MMF [개인: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신종MMF(S-26호) / 법인: 신종MMF(S-29호)]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"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" 및 "신종MMF(S-26호)"로 전환되며,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"신종MMF(S-29호)"로 전환됩니다.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다. 전환형 구조 1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[종류 A-U]) <삭제> 라. 전환형 구조2 [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] - 신종MMF [개인: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 / 법인: 신종MMF(S-29호)] 종목 전환을 청구한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"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"로 전환되며, 수익자가 법인등 기타 개인이 아닌 경우"신종MMF(S-29호)"로 전환됩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

	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펀드명 :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파워1.5배 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7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9.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9. <삭제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

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(추가)	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IT코리아 증권투자신탁(제1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7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8.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8. <삭제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밸류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7조의2 (투자신탁의 전환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8.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수익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. 8. <삭제>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2. 전환절차 및 방법**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이 가능한 종류(A-U)를 통해 투자신탁 간의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종류 A-U 집합투자증권 간에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전환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<삭제>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하나UBS 신종MMF(S-26호) 삭제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	**6.집합투자기구의 구조** 나. 종류형 구조 ※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(엄브렐러 클래스 펀드) <삭제>
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하나UBS 신종MMF(S-26호)(수익자가 개인인 경우)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, 하나 UBS신종MMF(S-26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)	**11. 매입, 환매 기준가격 적용 기준 및 매입, 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** 다. 전환 - 엄브렐러 클래스(A-U) 간의 전환 (1) 전환형 구조 펀드명 : <삭제> (2) 전환 절차 및 방법 ③ 하나UBS 인Best신종MMF(K-1호)[국공채], 하나UBS 신종MMF(S-29호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(이하 생략, 현행과 동일)
제4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제1호)[채권혼합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 등급	**5등급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**4등급**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투자위험**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4.68%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투자위험**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5.41%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보통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
표지	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4.68%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낮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5.41%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보통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연금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수익률 투자위험등급산정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8년 12월 24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투자위험 등급	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[1] 투자전략** 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투자위험**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,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'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'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	**[2]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** **2. 투자위험**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75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
	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표지	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8년 12월 24일 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-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수익률 투자위험등급산정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,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'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'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) 이 투자신탁은 추후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'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'을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**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]**	**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**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(연율화)]이 12.75%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(다소 높은 위험 수준)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주)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<삭제>

	(생략) <추가>	 **[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]** (생략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생략)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(업데이트)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